

이사회규정	
문서번호 :	송원.A01.0200
제정일자 :	01.11.1981
개정일자 :	10.09.2025
개정번호 :	4

1. 목 적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, 결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운 용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임 무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4. 구 성

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.

5. 의 장

5.1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
5.2 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본 규정 5.1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.

6. 종류 및 소집

이사회는 정기이사회, 임시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.

6.1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6.2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일자를 의장이 결정하여 개최 7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. 단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 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6.3 상임이사회는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회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7. 결의방법

7.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

이사회규정	
문서번호 :	송원.A01.0200
제정일자 :	01.11.1981
개정일자 :	10.09.2025
개정번호 :	4

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 또한 상법 기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- 7.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7.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8. 감사의 출석

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9. 결의사항

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9.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- 9.1.1 주주총회의 소집
- 9.1.2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- 9.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- 9.2.1 회사 경영상 기본방침의 책정과 변경
- 9.2.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영업정책
- 9.2.3 자금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- 9.2.4 관계회사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- 9.3 조직에 관한 사항
- 9.3.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9.3.2 지점, 공장, 사업소 등의 설치 및 통폐합
- 9.4 인사, 노무에 관한 사항
- 9.4.1 급사원 이상의 모집
- 9.4.2 간부사원 (부서장 급)의 인사
- 9.5 자산에 관한 사항

이사회규정	
문서번호 :	송원.A01.0200
제정일자 :	01.11.1981
개정일자 :	10.09.2025
개정번호 :	4

9.5.1 투자에 관한 사항

9.5.2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한 사항

9.5.3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

9.5.4 결손의 처분

9.5.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
9.6 장기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

9.6.1 신주의 발행

9.6.2 사채의 모집 및 발행

9.7 9.7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

9.7.1 대표이사의 선정

9.7.2 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직

9.8 기 타

9.8.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

9.8.2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10. 이사회 보고사항

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10.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
10.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
10.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11. 위임

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이사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.

이사회규정	
문서번호 :	송원.A01.0200
제정일자 :	01.11.1981
개정일자 :	10.09.2025
개정번호 :	4

12. 사외이사의 활동지원

사외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13. 사후승인

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설명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만약,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.

14. 의 사 록

이사회회의 회의 경과에 대한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15. 규정의 개폐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다.

16. 부 칙

이 규정은 198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에서 회장, 부회장, 사장으로 변경 함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5 의장, 6 종류 및 소집, 7 결의방법 변경)

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5 의장 변경 10 이사회 보고사항 추가)

이 규정은 2025년 9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12 사외이사의 활동지원 추가)